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97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한정애 · 조인철 · 박홍배
윤후덕 · 이개호 · 박상혁
유동수 · 박수현 · 박희승
정준호 · 고민정 · 강준현
김태년 · 최기상 · 추미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략수출의 지원

제18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11. 전략수출금융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제18조(업무)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략수출의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u><신 설></u>	11. 전략수출금융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 11. (생 략)	12. · 13.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